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」 제107조에 따라 고시하는 실무위원회 심의 사항에 국가교통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심의사항을 추가하고, 기 폐지된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국가교통위원회 심의·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안

국가교통위원회 심의·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4항을 삭제한다.

②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

-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-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- 「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도심항공교통법’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형항공기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도심항공교통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변경(중대한 변경은 제외한다),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도심항공교통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실증사업구역의 지정(국가교통위원회에서 최초로 지정한 후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 및 변경·해제에 관한 사항

- 도심항공교통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용구역의 지정(국가
교통위원회에서 최초로 지정한 후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
한다) 및 변경·해제에 관한 사항
- 도심항공교통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및 변경
허가에 관한 사항
- 도심항공교통법 제12조에 따른 버티포트의 지정·변경·해제에
관한 사항
- 도심항공교통법 제13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·변경
·해제에 관한 사항
- 도심항공교통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규제의 변경(중대한
변경은 제외한다)에 관한 사항
- 도심항공교통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규제의 변경(중대한
변경은 제외한다)에 관한 사항
- 도심항공교통법 제20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운영 평가에 관한
사항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②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-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	<p>②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-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- 「<u>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‘도심항공교통법’이라 한다) 제2조 제2호에 따른 <u>도심형항공기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</u> - <u>도심항공교통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변경(중대한 변경은 제외한다),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</u> - <u>도심항공교통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실증사업구역의 지정(국가교통위원회에서 최초로 지정한 후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 및 변경·해제에 관한 사항</u> - <u>도심항공교통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용구역의 지정(국가교통위원회에서 최초로</u>

지정한 후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
에 한한다) 및 변경·해제
에 관한 사항

- 도심항공교통법 제9조에 따른
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및
변경허가에 관한 사항

- 도심항공교통법 제12조에 따
른 버티포트의 지정·변경·해제
에 관한 사항

- 도심항공교통법 제13조에 따
른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·
변경·해제에 관한 사항

- 도심항공교통법 제15조제2항
에 따라 완화된 규제의 변경
(중대한 변경은 제외한다)에
관한 사항

- 도심항공교통법 제16조제2항
에 따라 완화된 규제의 변경
(중대한 변경은 제외한다)에
관한 사항

- 도심항공교통법 제20조에 따
른 시범운용구역 운영 평가에
관한 사항

④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

-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의
실행을 위한 소관별 추진계

<삭 제>

획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
-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
- 광역교통체계 사전검토서 관한 사항

-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,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 중,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국가교통위원회 심의·조정을 요청한 사항 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국토해양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요청한 사항

-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시설간 연계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

- 대중교통수단의 광역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(다만, 버스운송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재결한 사

항을 제외)

- 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광역철도구간의 고시에 관한 사항
- 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- 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